

# 동북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개선의 시사점

김근식 | 경남대학교

본 논문은 국제적 차원의 인권 레짐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현재 동북아 인권레짐의 현황과 발전 전망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인권요구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 인권개선에 인권레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요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유의미한 인권레짐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인권개선이라는 국제적 요구에 대해 북한은 최근 들어 이중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권관은 여전히 우리식 인권을 고수하고 서방의 인권공세를 체제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별 대응에서는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북한의 인권대응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향후 인권레짐의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즉 북한을 포함하는 국제적 인권레짐이 형성되고 제도화될 경우 북한이 그 틀 안에서는 제도의 효과를 받아들이고 협력과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음을 예상케 한다.

**주제어:** 국제 레짐, 인권의 레짐화, 동북아 인권레짐, 북한의 인권관, 이중적 대응

## I. 문제의 제기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1990년대 이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형성되었다.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체제개혁의 방식이든,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거대하고 급격한 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005-J01502).

제혁명의 방식이든<sup>1)</sup> 사회주의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각국의 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국제환경 등에 따라 소련동구형의 '충격요법(shock therapy)' 혹은 빅뱅(big bang)식 체제전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형의 '점진주의(gradualism)' 체제개혁이 진행되기도 한다.

체제전환이라는 대세와 함께 북한도 변화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지만 아직 의미 있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과연 변화했는가를 놓고 일각에서는 조그마한 변화까지도 대단한 것인양 과대평가하거나 실질적인 변화마저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극단적 양 편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 변화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앞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그리고 북한변화는 본질적으로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에 의해 추동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변화의 촉진요인은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변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역할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들여다보는 것은 핵심은 아닐지라도 경시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를 전제로 본고는 북한 인권개선의 당위성을 전제로 향후 북한의 변화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북한인권이라는 특정이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이야말로 외부에서 북한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인권의 개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방식과 접근법을 놓고는 이견과 논란이 존재한다. 이른바 남남갈등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로 북한인권이 자리 잡고 있음도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현실의 참담함과 북한 인권 개선의 절박성에는 충분한 공감대와 동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부의 노력 특히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수와 진보는 차이가 없다. 다만 인권개선의 현실적 방법으로서 보수는 정권 교체와 북한 민주화라는 보다 근본적 접근을 하는 반면 진보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 달성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환경과 여건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공히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 인권개선에 초기 추동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북한 인권개선의 가능성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1)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개혁과 혁명으로 구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코르나이(Kornai 1992, 386-392) 참조.

이에 유의하면서 본 논문은 국제적 차원의 인권 레짐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현재 동북아 인권레짐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북아 인권레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요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한 인권개선에 인권레짐이라는 국제적 요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국 북한변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첨예한 쟁점이자 뜨거운 관심사인 인권이슈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일관된 문제의식이다.

## II. 국제 레짐 이론과 인권의 ‘레짐화’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인 바, 행위자간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협력과 합의를 강제할 구속력 있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국제기구와 국제제도를 만들어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처럼 무정부 상태하의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간의 제도적 협력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이다(김학성 2000, 82).

국가 간 힘의 분포에 의한 분쟁과 갈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를 협력과 상호의존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신자유주의의 접근이고 이를 전제로 국가들이 특정한 기구와 제도 및 레짐을 만들어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sup>2)</sup> 제도가 협력을 발생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핵심가정은 국가가 국제행위의 중심 단위이고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하며 국가는 합리적 이기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갈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김학성 2000, 69-73).

무정부상태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조건들로는 상호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행위자들 사이에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상호주의(reciprocity)가 실천될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제도화가 이뤄지면 관성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즉 레짐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국가의 행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도에 맞춰지며 제도의 변화나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국가들 사이에 상호이익이 존재하고 이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면 협력이 발생

2)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 대해서는 그리एको(Grieco 1988)와 케헤인(Keohane 1989)을 참고.

하게 되는 바, 제도의 핵심적 기능으로는 반복적 상호성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행동양식이 창출되고 정보 양의 증대로 상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김학성 2000, 84-85). 이 같은 기능을 통해 제도는 상호이익이 형성됨으로써 국가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도는 '행위역할을 지시하고 행동을 제한하며 기대를 형성하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연결된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규칙들'로서 제도의 구체적 형태로는 국제기구 등의 공식적 제도, 특정 이슈에 대해 국가 간에 합의된 명백한 규칙을 갖는 국제레짐, 관습과 같은 비공식 제도 등을 포함한다(Keohane 1989, 3-4).

그리고 제도의 한 형태로서 간주되는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하는 바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Krasner 1991, 2)'로 정의된다. 따라서 국제레짐이 형성되면 상호이익의 추구로 인해 협력이 발생하고 제도의 관성력으로 협력이 유지된다. 결국 구속력 있는 국제레짐의 결성과 발전이 국제협력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제도가 패권국가의 힘의 산물이고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를 장악하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도구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제도가 국가 간 협력을 결과할 수 있다는 제도의 효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강대국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약소국이 레짐에 합류하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막아내고 약소국의 발언권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최영종 2004, 347-348) 국제레짐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과 동의를 창출한다는 자유주의적 접근이 선차적이고 그 과정에서 패권국가의 체계 모니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현실주의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레짐과 관련해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규범과 원칙은 특히 인권이라는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국제레짐을 통해 각국에 개입할 수 있다. 이익집단 모델을 원용해 국제제도와 국내정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인권레짐의 작동을 설명하기도 한다(최영종 2004, 338). 즉 국제제도가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할 경우 잠재적 수혜자들이 그 레짐을 강력하게 선호하게 되는 바, 인권확대를 원하지만 정부의 반대나 특정세력의 저항으로 진전되지 못할 경우 국내세력은 인권레짐을 통해 자국 내에 인권확대를 시도하기도 한다.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다층적 행위자(국가, 국제기구, NGO, 개

인)들의 기대가 수렴되어진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말한다.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차원의 인권레짐이 확대되고 있다.<sup>3)</sup> 이 같은 인권분야의 발전은 이른바 '인권의 레짐화'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서창록 2005, 56-57).

대표적인 인권레짐으로는 우선 유엔 차원에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sup>4)</sup>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도 해당 국가들의 인권 영역을 규율하는 이른바 인권레짐들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의 인권레짐으로는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CE) 산하에 설립된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민주제도 인권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이성우 2008, 69) 등이 있다. 유럽 국가들을 규율하는 인권 규범으로는 유럽인권협약(1950), 유럽사회헌장(1961), 고문방지를 위한 협약(1987),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1995) 등이 합의제정되어 있다. 특히 유럽지역은 EU의 주도로 2000년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을 통해서 제3세계 발전지원과 관련하여 정치대화를 통해 인권존중과 민주주의 원칙, 법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들과의 협력에 인권조약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최의철 2005, 57).

미주 지역의 인권레짐은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역내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권고안을 내며 개인청원을 심사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서창록 2005, 57). 실제로도 미주인권위원회는 1970년대 남미 군사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의 인권레짐은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가<sup>5)</sup> 1981년 아프리카 인권헌장(African Cha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을 채택하고 잠비아의 반출에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이성우 2008, 72).

그러나 인권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지역별 인권레짐은 인권 후진국의 인권 개선을 촉진

- 
- 3) 인권레짐의 형성과 제도화 및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모델로는 도넬리의 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 국제주의 모델이 있고 이원웅의 헤게모니 모델, 합리적 선택모델, 국제 도덕성 모델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도넬리(Donnely 1998, 65-68)와 이원웅(1996) 참조.
- 4) 유엔인권위원회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로 바뀌었다.
- 5) 현재는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으로 발전되었다.

하는 국제적 협력을 가능케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저항 때문에 레짐의 효과를 높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도 레짐 참가국 중 기준에 인권보호가 상당히 이뤄지고 인권단체의 활동이 강한 유럽 국가의 경우 인권보호가 강화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Moravcsik 1995).

이처럼 인권레짐의 효율성 즉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가치나 의제를 지지하는 국내 이익집단 혹은 정치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국내 이익집단이 있는 경우는 국제레짐이 그 이익집단의 상대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행위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국내 이익집단이 없는 경우는 국제적 규범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특히 인권과 같은 의제는 인권지향의 시민단체와 이를 적극 지지하고 격려하는 초국가적 시민단체 망(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의 역할이 크다(최영중 2004, 344-345). 거버넌스의 입장에서 인권레짐의 형성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형성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서창록 2005, 67).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레짐이 형성되고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강대국의 힘의 산물을 강조하는 권력기반으로 설명하고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상호이익의 존재 때문에 국가 간 협조가 가능하다는 이익기반론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구성주의 접근에서는 국제레짐이 상호작용과 간주관적 인식 형성을 통해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기도 한다(서창록 2005, 61-67). 그러나 특정시각이 옳다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설명한다고 봐야 한다. 즉 지역 인권레짐이 형성되고 작동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은 사실 때로는 강대국의 노력과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회원국의 협력과 상호이익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불어 상호작용을 통해 회원국의 인식이 변화하기도 한다. 이를 전제한다면 인권레짐은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며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이를 촉구 하고 제기하고 추동하는 동북아에서의 인권레짐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동북아 인권레짐의 현황

필요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유의미한 인권레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인권의 개선을 압박할 만한 그리하여 실제로 북한인권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동북아 차원의 인권레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 내 인권협력이 불가능한

척박한 지금의 현실에서 기인한다.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인권영역에서는 공동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고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으로 얻게 될 가시적 이익보다 국내정치적 비용이 더 큰 중국과 북한의 존재가 무엇보다 인권레짐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중관계의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중국-일본 간 정치군사적 불안정성 그리고 북핵문제와 대만문제 및 영토문제 등 강력한 안보이슈의 존재는 이들 지역에서 인권에 관한 공동의 인식과 이해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패권국가인 미국 입장에서도 눈앞의 시급한 현안을 제치고 굳이 인권레짐에 열과 성을 다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 또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국가 간의 상이한 해석이 여전하고 상이한 문화적 뿌리와 정치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며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역사적 경험도 부재하고 레짐형성을 통한 공동의 사회경제적 기대도 미비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동의 레짐을 만들 만한 다자대화의 경험도 아직은 미흡하다.

결국 동북아 인권레짐의 형성은 그로 인한 국가이익이 아직 크지 않고 패권국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공유된 문화도 상대적으로 낮고 다자대화의 경험도 일천하다는 점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이성우 2008, 77-82). 이는 역으로는 향후 동북아 인권레짐의 발전을 위해서는 패권국가의 관심과 주도력,<sup>6)</sup> 합리적 선택에 의한 제도화와 이익의 창출, 인식과 정체성의 변화를 동시에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가시적인 인권레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인권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이 존재하고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유엔차원의 동북아 인권협력으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주관하는 '아태지역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워크숍'이 1990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태지역 각국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고위 관리가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국가인권기구와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최의철 2005, 114).

1993년에는 49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인권대회에서 이른바 '방콕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북한도 참여한 이 선언은 인권이 본질에서 보편적이지만 국가별 지역별 특성과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에 대한 이른바 아시아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다(이상환 2007, 331).<sup>7)</sup>

6) 미국이 인권레짐의 형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보장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패권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7) 방콕선언에 대해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인권관에 반발한 자주적 성과로 평가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인권 논의는 아세안+3(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 등에서 포괄적 안보 논의의 맥락으로 인권이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에서 사안별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정부 차원의 인권협력으로 유일하게 정례화되고 있는 것으로는 아태 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을 들 수 있다. 1996년 제1차 지역 국가인권기구 회의를 계기로 처음엔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도네시아의 국가인권기구들이 모여 호주 시드니에 사무국을 두고 출발했다. 포럼의 성격은 아태지역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태지역 내의 국가인권기구 조직체로 규정되어 있다. APF는 '국가인권기구의 효율성 확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역할강화를 위한 아태 국가의 정부 및 시민단체 지원, 인권을 위한 지역적 협력체제 발전' 등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북아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태지역의 국가 간 인권협력의 다자 기구로는 사실상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입국가에 대해 인권차원의 개입을 강요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역협력을 유도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회원은 15개국이고 준회원은 2개국이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11월 정회원 기구로 가입했다.<sup>8)</sup>

국제적 차원과 국가 간 차원의 인권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동북아 지역이 아직도 인권이 열악하고 인권의식이 낮기 때문이고 특히 중국과 북한 등 인권침해 국가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기구와 단체들이 적지 않다.<sup>9)</sup>

비정부단체들의 인권분야 협력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NGO 간 인권협력과 합

(리창국 1998, 31).

8) APF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최의철 외(2005, 119-126) 참조.

9) 국제사면위원회(AI: Amnesty International), 미국의 인권 감시 기구(Human Rights Watch), 영국의 국제반노예연대(Anti-Slavery International)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인권관련 활동을 벌이는 국제비정부기구인 반면, 미국의 디펜스 포럼과 북한인권위원회, 일본의 북조선난민구호기금과 '구출하자 북조선민중을! 긴급행동네트워크(RENK)',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등은 북한인권에만 초점을 맞춘 시민단체이다.



의도출은 정치제도의 차이와 인권관련 NGO들의 현황 차이로 인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온전한 의미의 비정부단체가 자율적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없고 북한은 아예 민간영역의 존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과 한국 역시 NGO라는 용어와 활동수준도 상이하다. 그나마 아시아 지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인권과 관련한 의미있는 공동의 협력을 창출한 사례로는 1997년 '아시아 인권현장'의 채택과 남아시아지역협력협회(SAARC)의 '여성 아동 윤락인신매매 예방과 투쟁을 위한 2002년 SAARC 협약' 채택 등을 들 수 있다(최의철 2005, 127-130).

결국 동북아 인권레짐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고 다만 유엔차원의 인권협력과 NGO 중심의 인권협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다만 지구상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로 알려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유엔을 비롯해 서방국가와 아시아 각국의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와 맞물려 있는 최대의 공동 이슈로 자리 잡고 각국 NGO들의 연대와 네트워크에 촉진제가 되고 있다(라미경 2006, 93). 인권레짐 부재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오히려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아래로부터 인권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 IV. 북한의 인권관과 대응

동북아 인권레짐이 부재한 가운데서도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계속해서 북한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적 비정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도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의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국제적 요구와 압력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향후 인권레짐의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유엔의 요구와 INGO의 요구에 대해 최근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면 그 패턴이 존재한다면 향후에 동북아 인권레짐이 형성될 경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개선이라는 국제적 요구에 대해 북한은 최근 들어 이중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특수한 인권관을 고수하고 이

를 갖대로 서방사회의 인권공격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 대응 차원에서는 인권관련 법제의 개정이나 유엔에서의 적극적 해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개념과 관련해서 북한은 아직도 '우리식' 인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sup>10)</sup>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 '우리식' 인권의 정당성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로동신문 2001/03/02). 인권도 계급성에 기초해야 하며 따라서 초계급적인 인권의 보편성, 천부인권성, 항구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북한의 인권은 개인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북한의 입장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되고 집단의 이익 우에 개인의 이익을 올려놓는 개인주의가 지배'한다면서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가져오며(김창렬 1990, 93)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은 전적으로 사회의 이익에 의존하며 사회적 이익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이익을 담보하는 필수적이며 일차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개인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이 생활원칙'이 되고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해설』 1973, 80-81). 또한 북한의 인권개념은 개인보다 계급의 이익을 앞세운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계급성을 견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계급적 이익을 훼손하는 개인적 권리와 자유는 허용될 수 없고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북한에서 인권의 본질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신성한 권리'로 정의된다(김억락 1997, 42-47). 즉 인권은 '인간의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일 수 있게 하고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주인된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됨으로써 주체사상의 핵심 개념인 자주성과 창조성의 관점에서 인권이 정의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개념은 '사회적' 인간의 권리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천부적 권리보다는 집단적 이익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그 맥락에서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는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우선시함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인권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10)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시각은 김근식(2002); 최의철(2001); 서보혁(2007)을 참고.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로(『조선말대사전 2』 1992, 1696) 정의되고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로서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정치용어사전』 1970, 718).

인권의 상대주의와 '우리식' 인권 개념에 따라 북한은 자신의 인권 관련 법제가 사회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인민의 삶을 더 잘 보장한다는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우선 그들의 헌법이 노동계급의 헌법으로서 인민민주주의제도의 특성에 맞게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정의하고 있다(김경현 2000, 50-55).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기본 권리의 특징을 주로 언급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데 있으며, 공민의 권리와 자유가 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확대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백성일 2008, 52-56). 특히 공민의 법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는 집단주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통일을 추구하므로 이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종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황금철 2003, 41-42), 이는 곧 사회주의사회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사회제도의 본성에 의하여 그 본질이 규정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김억락 1985, 222).

특히 여성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식 인권이 훨씬 우월하고 오히려 서방의 여성 인권이 열악함을 강조한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수레의 한쪽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표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되었으며 사회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높여주었다고 언급하고 있다(리금숙 2004, 32-33). 또한 무엇보다 모든 여성들에게 국가생활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그들 법제의 우월성을 언급하며, 반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법제와 노동 보호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비난하고 있다(최정심 2006, 32-33).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또한 자신의 사회주의적 인권이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서방식 인권이 가장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비난한다. 특히 미국의 인권 현황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비난하는 동시에, 그 반동적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의 불모지대인 이유는 미국의 사회 제도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선거할 권리를 짓밟고 있기 때문이며, 각종 조치를 통하여 인민들의 온갖 의무와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림동춘 2006, 67-73). 오히려 미국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권리를 비롯하여 여성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유명선 2007, 46)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을 가장 혹심하게 유린하고, 인종차별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며 출판보도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림동춘, 2006, 67-73).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논하기 이전에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행위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며(김완선 2006, 45-47), 최근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유린 역시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는 논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엄성남 2006, 41-43).

이러한 미국의 인권에 대한 비난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난으로 곧바로 이어지며, 이를 다시 민주주의의 전파의 반동적 본질과 부당성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단호히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는 논지로 확산시키고 있다(양철민 2007, 45).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전파라는 허울 아래 인권옹호를 외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혹심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림동춘 2006, 75).

결국 북한의 인권관은 '우리식' 인권의 우월성과 서방국가의 인권현실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의 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적극 참가하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시 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주권기관의 선거에 참가하거나 대의원으로 선거되고 있으며 주권을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행사하고 있다(김억락·한걸 1985, 161).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도 있을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만민의 평등>과 <개성의 자유>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위선이며 기만이다(김억락·한걸 1985, 162).

즉 북한의 인권관은 사회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사회경제적 차원의 실질적 권리를 인권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정태욱 2006, 15) 특히 노동과 관련된 제도와 여성, 아동들을 위한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리현숙 1997, 64-67; 김명옥 2006, 66-70; 최정심 2006, 32-33). 동시에 이와 반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들을 지적하면서 서방식 인권

의 허구성을 비난함으로써 북한식 인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식’ 인권의 우월성과 서방식 인권의 부당성을 전제하는 북한은 당연히 서방 특히 미국의 인권공세를 내정간섭 혹은 사회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한다.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에 대해 북한은 일단 부당하고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국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사회주의적 책동으로서 북한을 와해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으로 간주된다(전인철 1990, 85). 인권을 무기로 한 사회주의 공격과 내부 와해공세이자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이라는 것이다.<sup>11)</sup> 그리고 서방의 인권압력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은 인권에 대한 자기 기준을 고수하는 지극히 정당한 자주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리창국 1998, 32).

서방의 인권공세를 체제안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북한은 인권이 곧 국권이라는 인식으로 발전한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 보장이 있어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데 자주권을 상실당하면 인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이고 이는 곧 인권이 국권과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로동신문 1995/06/24; 로동신문 2007/08/17).<sup>12)</sup> 즉 국가의 자주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서 미국의 인권공세를 체제안보의 관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인권은 ‘국가의 보장 아래서만 실현’되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은 ‘국가 및 사회와 무관한 자유’가 아닌 ‘국가 및 사회에 의해 보장된 자유’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8). 인권이 국권이라는 인식은 최근 선군시대에 와서 ‘선군이 바로 인권옹호의 선결이며 믿음직한 담보’라는 식의 국권수호 논리로 발전하고 있다(김수암 2007, 339).

북한의 인권관은 여전히 우리식 인권을 고수하고 서방의 인권공세를 체제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구체적 사안별 대응에서는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차원에서는 외부의 인권공세에 대해 거센 반발과 비난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의 차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일정 부분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향적 태도와 점진적 개선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11)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다(김정일 1998, 477).”

12)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로동신문 1995/06/24)”;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로동신문 2007/08/17).”

서방의 인권공세에 거세게 반발하면서도 사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인권법제의 개정을 시도해 왔다. 이미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거주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구를 추가했고 2009년 헌법에서는 놀랍게도 '인권'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즉 2009년 헌법 8조에 '국가는 ... 근로민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권존중의 조항을 최초로 삽입한 것이다.

인권침해 우려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북한 형법도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외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 1995년 이후 수차례의 형법 개정을 통해 북한은 과거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강하게 드러냈던 이른바 '반혁명 범죄'를 '반국가 범죄'로 용어를 바꾸고 비민주적 요소로 지적되었던 유추적용도 상세하게 제한을 두었다. 특히 2004년 형법 개정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3)</sup>

특히 북한은 2009년 UPR 보고서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견해와 입장을 '보편성과 평등성, 개별성, 존엄성, 불가분성'으로 핵심정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6). 인권이 '보편적이고 평등하며 인권이 각 개인에 속하고 본질상 한 사람의 존엄성과 관련된 권리며 인권이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과거 북한이 인권의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물론 뒷부분에 자주권을 강조하고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을 역설하고는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리 눈에 띄는 대목임에는 분명하다.

북한은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차원에서도 유엔 등의 공신력 있는 레짐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인권기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국제기구와 선별적인 기술협력을 수용하기도 하고 유럽연합 및 회원국가와의 수교과정에서는 정치대화 및 인권대화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특히 2009년 유엔 UPR에 대한 북한의 보고서와 대응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적극적인 설명과 반박의 모습을 보였다. 2009년 북한의 UPR 대응은 자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논리개발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정부대표 및 INGO, NGO의 평가였다. 북한은 11명을 대표단으로 하여 최고인민회의, 중앙재판소, 내

13) 2004년과 2005년 개정내용까지를 포함한 최근 북한 형법 전문은 장명봉 편(2008, 172-197) 참조.

각의 보건성 관계전문가 뿐만 아니라 1명의 통역사를 대동하여 여러 국가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관련 전문가가 직접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UPR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해명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최근 북한의 유엔관련 인권대응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향후 인권레짐의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즉 북한이 유엔차원의 인권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자신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유엔의 공식요구에 대해 책임과 성의를 다하려는 노력으로 인식되며 이는 곧 북한도 포함하는 국제적 인권레짐이 형성되고 제도화될 경우 북한이 그 틀 안에서는 제도의 효과를 받아들이고 협력과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음을 예상케 한다.<sup>14)</sup>

## V. 동북아 인권레짐의 형성과 북한의 참여를 위하여

동북아 인권레짐의 부재와 북한의 인권관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이무철 2010, 197). 보편적 가치이자 절대적 규범인 인권영역에서 개별국가의 간섭이 아닌 지역적 레짐의 방식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북한의 완강한 입장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인권레짐은 분명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인권레짐의 형성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서 궁극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서창록 2005, 75). 특히 유엔과 관련한 북한의 최근 반응이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제도의 틀에서는 북한도 최소한의 협조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동북아 차원의 인권레짐이 형성될 경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훨씬 더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인권이라는 이슈의 민감성과 개별국가 차원의 접근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지금 시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효율적 접근은 결국 지역인권레짐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특히 인권레짐의 부재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동북아 인권레짐의 씨앗은 NGO 차원의 국제적 협력이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정부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 방식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14) 물론 북한의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이 전제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체제붕괴 시도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한, 북한이 인권레짐에 적극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평가도 여전히 존재한다.

동북아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고 인권이라는 이슈의 특수성과 북한의 특수한 인식 및 입장을 고려할 때, 향후 동북아 인권레짐의 형성방향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점진적 접근과 초국가 기구 설립 추진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동시 참여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형성 방안으로는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구성 및 인권과의 연계, ARF의 역할 확대, 아태지역 인권포럼 결성, 국가인권위원회간 다자 협의체 구성 발전 등을 들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의 참여유도 방안으로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인간안보 개념을 적용하며 안보에 대한 협력적 접근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최의철 2005, 139-147). 일각에서는 동북아 인권위원회 설치와 동북아 인권센터 설립도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이재호 2007, 74-75).

문제는 인권레짐에 북한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위한 6자회담마저도 결렬과 중단, 교착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힘들게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권레짐에 북한이 순순히 참여하기는 난망할 것이다. 북한이 다자인권레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권존중과 체제인정에 대한 명백한 보장을 해야 한다. 서방의 인권공세를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 북한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이익과 당근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주권존중의 전제가 없는 한 인권레짐에의 참여를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개선에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우 안보와 경제와 인권의 포괄적 협상의 결과물이었음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주권 보장과 인권 개선을 동시 병행하고 안보위기 해소를 전제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주권 및 안전 보장과 인권 개선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처음부터 다자인권레짐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6자회담을 토대로 북한의 체제인정 및 안전보장과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를 진행하면서 그와 병행해서 인권문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6자회담 산하 워킹 그룹 회의로 ‘동북아 인권대화’를 시작한다면 인권레짐의 맹아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권레짐을 통해 북한인권의 개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다시 원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의 함의이다. 지금도 남남갈등의 중요 의제인 북한인권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날선 공방이 되는 것은 바로 인권개선의 효율적 방식에 관한 이견차이이다. 따라서 동북아 인권레짐을 통해 북한인권 개



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인권개선의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5)</sup>

이와 관련해 필자는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Denny Roy 1997, 1-19) 북한체제의 인정과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sup>16)</sup> 이는 곧 인권문제를 부당한 개입과 정치적 활용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북한의 체제 내적 인권개선의 가능성을 먼저 인정한 연후에 국제화를 모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로의 편입을 돕는 방식과(이재호 2007, 75-76)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다자적 개입이 체제부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의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의 모색과 동북아 인권레짐의 필요성과 더불어 북한 인권개선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식과 원칙을 동시에 합의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투고일 2010년 11월 30일

심사일 2010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1년 1월 19일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2009년 유엔 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관련자료』.  
 \_\_\_\_\_. 2010. 『2009 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  
 집』.  
 김경현. 2000. “우리나라 인민민주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의 특징.” 『김일성종합대  
 학학보: 력사법학』 46권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5) 서보혁은 북한인권 개선의 접근 원칙으로 국제인권원리 준수, 인권과 평화의 조화, 실질적인 인권개선, 협력적 인권개선을 제시하고 있다(서보혁 2007, 398-402).  
 16) 동서 대결상황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인권향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알려진 1975년의 헬싱키 협정의 경우도 인권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정과 안보충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김병로 1997, 38-40).

- 김근식. 2002.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서울: 사람생각.
- 김명옥. 2006. "우리나라에서 공민들의 휴식권리보장제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52권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병로. 1997.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수암. 2007.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편.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 김정일. 1998.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13』, 평양: 평양출판사.
- 김억락. 1997. "인권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43권 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억락·한걸. 1985. 『국가와 법의 리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완선. 2006. "미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 소동의 반동성." 『정치법률연구』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창렬. 1990.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2호.
- 김학성. 2000.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 라미경. 2006.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국제 NGO의 역할 모색." 『국방연구』 49권 2호.
- 리금숙. 2004. "우리나라에서 녀성들이 사회에 널리 진출할 수 있는 조건." 『정치법률연구』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창국. 1998. "아세안의 창설과 그 자주적 활동." 『김일성대학학보: 역사법학』 44권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리현숙. 1997.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린이보호의 기만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43권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림동춘. 2006. "미국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52권 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림동춘. 2007. "미국은 세계최대의 국제인권범죄자."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53권 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백성일. 2008.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공민의 기본권리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54권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사회과학언어학연구소. 1992.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1970.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보혁. 2007. 『북한인권』, 서울: 한울.
- 서창록. 2005.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국제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44호.

- 양철민. 2007.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파책동의 반동적 본질." 『정치법률연구』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엄성남. 2006. "미국은 다른 인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인권범죄국가." 『정치법률연구』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유명선. 2007. "미국은 세계최악의 여성인권 유린국가." 『정치법률연구』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이무철. 2010.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이수훈 편.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 이상환. 2007. "국제적 반부패와 인권 문제에 대한 고찰: 보편성과 상대성의 충돌과 조화." 『국제정치연구』 10권 1호.
- 이성우. 2008.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 동북아에서의 '인간안보레짐'의 형성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재호. 2007. "동북아시아의 인권담론." 『한국동북아논총』 44집.
- 인민과학사. 19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 평양: 인민과학사.
- 장명봉. 2008. 『2008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 전인철. 1990.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 11호.
- 정태욱. 2006. "북한의 법질서와 인권 개념." 『북한 인권 법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최영중. 2004. "국제제도론." 우철구·박건영 편. 『현대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사회평론사.
- 최의철. 2001.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
- 최의철 외. 2005.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서울: 통일연구원.
- 최정심. 2006. "공화국 법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법." 『정치법률연구』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황금철. 2000. "공민적 의무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49권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Donnelly, Jack. 1998. *International Human Rights*. 2nd ed. Boulder: Westview Press.
- Joseph, Grieco. 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No. 3.
- Keohane, Robert. 1989.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Westview Press.
- Kornai, Ja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sner, Stephen. 1991.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oravcsik, Andrew. 1995. "Explain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s: Liberal Theory

and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 No. 1.

Robert, Keohane. 1989.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Westview Press.

Roy, Denny. 1997. "The Security-Human Rights Nexus in North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1. No. 1.

『로동신문』

## ABSTRACT

##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and the DPRK: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Keun-sik Kim | Kyungnam University

Under the notion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will provide a meaningful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and North Korean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demands for human rights. Through this effort, the possibilities and the alternatives for effective operation of human rights regime for the future will be explored to prompt improvements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Despite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there is clearly a lack of human rights regim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efforts and demands for the regime is ever increasing. Recently, North Korea began to show dual response to such international demands. Although the North is still obstinate on the “human rights our way” ideology which considers human rights pressures from the West as a threat to the regime, it has began to show more assertive and affirmative attitudes on specific issues than previously.

The recent change in North Korea’s attitude leaves room for positive expecta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regime. In other words, with th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inclusive of North Korea—a more optimistic outcome may be expected involving cooperation and seeking mutual benefits.

**Keywords:** international regime, regimization of h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ideology, dual response